

위험물관리규정

(제정 1998.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위험물에 대한 관리, 정비,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교육에 필요한 가스시설, 실험기자재, 시약류 실험실 폐수 등과 이에 부수되는 것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교의 모든 위험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책임) 위험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관리자를 둔다.

1. 관리책임자는 각 단과대학장, 부속·부설기관의 장으로 한다.
2. 관리자는 각 단과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부속·부설기관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 보한다.

제5조(관리사항) 관리책임자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험물에 대한 정확한 품목대장 비치(별지 제 1호 서식)
2. 위험물에 대한 점검일지 비치 및 기록(별지 제 1호 서식)
3.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보관 및 보존 사용
4. 위험물에 대한 안전상태 수시 점검
5. 위험물의 경제적 사용
6. 기타 위험물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실험실 폐수처리) ① 사용자는 일반폐수와 유해폐수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 유해폐수는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위탁 수거·처리한다.

제7조(위험물의 손실처리) 위험물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되었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그 진위를 파악하여 위험물 손·망실 보고서(별지 제 2호 서식)를 재무지원실에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 위험물의 정비는 실험실습기자재 관리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제9조(불용품) ① 불용품이라 함은 노후 또는 파손 및 기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미활용 장비를 말한다.

② 불용품 처리를 원하는 위험물은 불용품 신고서(별지 제 3호 서식)을 재무지원실에 제출하여 장비상태의 확인·조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재무지원실은 전항의 조사과정에 의한 기기 점검 결과서를 작성 제10조의 등급분류에 의해 처리한다.

제10조(등급분류) 재무지원실은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불용품의 기기 상태를 점검·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분류한다.

1. A급 : 경제적인 수리로 재활용 가능한 기기(타 학과에 관리 전환 사용 가능한 기기)
2. B급 : 기기의 모형을 전시할 수 있거나 분배, 결합, 실습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기

3-1-27-2 위험물관리규정

3. C급 : 폐기 처리하여 그 부속품을 타 기기의 수리를 위해 사용 후 그 잔여분은 고물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기기

4. D급 : 활용가치가 없어 고물로 매각 처분해야하는 기기

제11조(폐기) 전 제10조에 의해 폐기 품으로 결정된 기자재는 본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물 품목 및 점검대장

관리대학(전공) : 대학(전공) 호

관리 책임	정	부

실험실습실명	
--------	--

품 명	규 격	위험내용	점검일	이상유무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물 품 망 실 신 고 서

담당자	실(팀)장	처 장	총 장

아래 물품이 망실되었기에 보고합니다.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고유번호	비 고

※ 망실 사유 :

년 월 일

분임 물품 관리자 : (인)

물품 관리 책임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불 용 품 신 고 서

담당자	실(팀)장	처 장	총 장

아래 물품을 불용품으로 신고합니다.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고유번호	비고(등급분류)

※ 불용 신고 사유 :

년 월 일

분임 물품 관리자 : (인)

물품 관리 책임자 : (인)